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 행정자치부	<h1>보도자료</h1>		2015. 12. 8(화)
		작 성 문 의	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팀 과장 김홍수, 사무관 김유일 (Tel. 044-200-2757,2758)	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노혜원 (Tel. 044-200-2435)
12.8(화) 10시30분(브리핑 시작) 이후 사용 * 행사부도 해당 기자단에 자료 배포				

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행태개선,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!

- 국조실·행자부 합동으로 9월부터 107개 중앙·지자체 행정기관 등 점검
-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적발, 개선필요 사항 41건 발굴
- 규제개혁 저해 행태 개선을 위한 민원·인허가 제도 등 개선 추진

-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저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민원처리시스템 등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보완·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, 현장 공무원의 권한남용·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,
 - 행정 현장에서 이 같은 행태는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의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.
- 이에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「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부조리 실태」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.

○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,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접수된 행정현장에서의 규제권한 남용 및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불합리한 행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,

○ 그 결과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*건을 적발하고, 법령 정비 등 개선필요 사항 41건을 발굴하였다.

* 법령상 근거 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규제남용 21건,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·비용전가 22건, 행정소송·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 27건, 형식적·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29건
(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)

□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,

○ 개선필요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·추진하기로 했다.

□ 아울러 정부는 현장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집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구기로 하였다.

- ① 불합리한 규제집행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강화 및 신속한 확인·시정조치 체계 강구
- ② 국조실·행자부·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T/F를 운영하여 접수거부·처리지연 등 부당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 및 인·허가제도 보완·개선방안 마련
- ③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 특별점검 주기적 실시(연 2회) 및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강화
- ④ 공무원 워크숍 및 교육과정을 통해 주요 적발사례 및 행태 개선방안 교육 실시, 사례집(e-book) 제작·공개
- ⑤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 행정행태 등을 평가하는 기업체감도 지도*의 조사대상 기업 확대 등으로 지자체간의 자발적 개선 경쟁 촉진

* 전국 8천여개 기업 대상으로 지자체별 행정행태, 행정시스템,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측정,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하여 지도로 표시(대한상공회의소 주관)

주요 적발 사례 및 개선필요 사항

- (규제남용) ① ○○군은 '14.12월 등 '다가구 주택(8가구) 신축' 민원에 대하여 '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허가를 제한하라'는 기관장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처분
 - ② ○○시는 '14.5월 '공장신설 승인 신청' 민원 등 4건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'주민동의서'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민원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
- (부당한 진입규제) ○○ 공공기관은 하계(일반)작업복 구매시('13.2월)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이 아님에도 입찰참가자격을 '최근 2년 이내에 3억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자'로 하여 창업·중소업체의 참여 제한
 - * 관련 법령상 물품제조계약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
- (처리지연) ○○대공원내 캠핑장 등록신청에 대한 ○○시 ○○구의 반려처분('15.4월)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 결정('15.6월)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
 - *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
- (무사안일) ○○군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업계획(무기성 오니를 활용한 화력발전소 연료 생산)에 대해 적합한 사업으로 안내('14.2월)하여 해당 업체는 최종 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을 위해 공장을 신축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 발생
- (개선필요) ○○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개발 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
 - ⇒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○○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

규제개혁 저해 행태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

점검 결과

총 140건



- ▶ 점검기간: '15.9.7~11.6(2개월)
- ▶ 점검대상: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 등 107개 기관

21

규제남용

- 부당한 인·허가 거부
- 불필요한 조건 부과

22

부당한 진입규제·비용전가

- 과도한 입찰 자격제한
- 민간위탁시 필요경비 업체전가

27

처리지연

- 행정소송·심판결과 미이행
- 인·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

29

무사안일

- 형식적·관행적 업무처리
-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

개선 방안

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

- 상시 '신고-확인-조치' 체계 구축, 국민불편 신속 해소
- 규제개혁 저해 행태 원인 분석, 민원 제도개선 등 추진

규제개혁 점검 강화

-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 특별점검 실시(연2회)
-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 강화

교육·홍보 강화

- (교육) 워크숍 활용 주요 사례 전파, 교육과정 반영
- (홍보) 사례집(e-book) 제작, 홈페이지 등 공개

자발적 행태개선 및 관련 제도 운영 내실화

- 기업만족도 평가를 활용한 지자체간 경쟁 유도
-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적극적 활용 추진
- 사전감사컨설팅 전 지자체 확산, 실질적 운용 독려

I. 점검개요 점검배경

- 규제집행 현장에서 복지부동 등 규제개혁 저해 행태·부조리 점검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을 적극 뒷받침

 점검기간 : '15.9.7(월) ~ 11.6(금) 점검대상 :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107개 기관 중점 점검사항

- 민원 처리과정에서 규제남용, 부당한 진입규제·비용전가, 처리지연, 무사안일 등 규제개혁 저해 행태·부조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

II. 점검결과**1. 점검결과 종합**

- 실태점검 결과, 규제남용 21건, 부당한 진입규제·비용전가 22건, 처리지연 27건, 무사안일 29건 등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적발, 개선필요 사항 41건 발굴
-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정비 등 개선필요 사항이 많으며, 지자체는 처리지연·무사안일 등에 대한 적발사항이 다수로 나타남

구분	규제남용	진입규제·비용전가	처리지연	무사안일	개선필요·기타	계
중앙·공공기관	-	10	3	4	29	46
지자체	21	12	24	25	12	94
합계	21	22	27	29	41	140

2. 주요 사례

규제남용

<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·허가 거부 >

- 지자체장의 지시, 인근주민의 반대, 내부지침 위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·허가 신청을 반려

▶ □□군은 '14.12월 등 '다가구 주택(8가구) 신축' 민원에 대하여 '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허가를 제한하라'는 기관장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처분

< 법령상 근거 없는 조건부과·서류제출 요구 >

-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·허가 조건 이외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여 민원처리를 지연

▶ ○○시는 '14.5월 '공장신설 승인 신청' 민원 등 4건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'주민동의서'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민원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

부당한 진입규제·비용전가

<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>

-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중소기업들의 입찰기회를 박탈

▶ ○○ 공공기관은 하계(일반)작업복 구매시('13.2월)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이 아님에도 입찰참가자격을 '최근 2년 이내에 3억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자'로 하여 창업·중소업체의 참여 제한

< 계약시 필수 반영경비 기업체 전가 >

- 민간위탁 등 계약시 효율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운영비 중 필수경비를 업체에 전가

- ▶ □□군은 '11.12월 '하수처리장 민간 위탁(4년간)' 계약 시 폐기물처리비, 안전점검비 등 시설의 효율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 2,274백만원을 업체에 부당 전가

처리지연

< 행정소송·심판 결과 미이행 >

- 행정소송·심판 패소 후에도 판결과 재결의 취지에 따라 승인 처분 등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지연 등 경제적 손실 야기

- ▶ ○○대공원내 캠핑장 등록신청에 대한 ○○시 △△구의 반려처분('15.4월)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 결정('15.6월)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

< 인·허가 등의 민원 처리 지연 >

- 업무과중, 관련부서 협의 등을 이유로 법정 민원처리기한을 도과하여 민원처리를 지연

- ▶ □□군은 '13.1월 '토석채취허가 신청' 서류에 흠이 없는데도 담당자가 서류를 방치하다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(30일)을 초과하여 441일간 지연 처리

무사안일

< 형식적·관행적 업무처리 >

-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민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소홀

- ▶ ○○군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업계획(무기성오니를 활용한 화력발전소 연료 생산)에 대해 적합한 사업으로 안내('14.2월)하여 해당 업체는 최종 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공장을 신축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 발생

< 불공정 거래행위 방치 >

-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여부 등 확인·감독 소홀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저해

▶ □□군에서는 '13.4월~'15.9월까지 건설공사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하도급 업체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3개 업체가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4,334백만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결과 초래

개선필요

< 자치법규 등 관련 규정 정비 >

-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민원인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제정·운영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사례

▶ ○○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

⇒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○○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

< 기업 부담 감소를 위한 규제완화 등 >

- 과도한 수수료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례

▶ ◇◇연구원은 모든 시험비용 산정시 시험항목 수수료 외에 기본료 1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시험비용의 최소금액을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 부담 가중

⇒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관리규정에서 기본료(10만원) 및 시험 최소비용(20만원) 규정 삭제 필요

기타

- 공장창업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·조치가 필요한 사례

▶ ○○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시 재산권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필수 구비서류가 아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민원처리를 지연

⇒ 각 지자체, 산단에서 공장창업 승인시 법적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·시정조치 필요

Ⅲ. 후속 조치계획

1. 점검결과 후속 조치

- 규제남용, 부당한 진입규제·비용전가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
- 점검을 통해 발굴한 개선필요 사항 중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,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·추진

2. 규제개혁 저해·소극행정 행태 개선방안 마련·추진

□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민원·인허가 제도 개선

- (신속대응체계)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활용한 규제개혁 저해 사례 상시 신고접수 및 신속한 확인·시정조치 체계 구축
- (제도개선) 국조실·행자부·법제처 등 관계부처 TF 운영, 접수거부·처리지연 등 부당한 행태 근절을 위한 민원 제도개선 및 인허가 법령개정 등 추진

□ 규제개혁 저해 행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조치 강화

- (특별점검)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 관련 특별점검 실시(연2회)
- (집행실태 점검)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등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로 온정적 처분 방지 및 집행력 제고

□ 공직자 인식·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지속 추진

- (교육) 점검결과 주요 사례를 공무원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전파하고,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과정에 반영
- (홍보) 규제개혁 점검결과 사례집(e-book) 제작, 홈페이지(부패척결 추진단, 행자부 및 각 시·도 등) 및 언론 공개

□ 자발적 행태개선 유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등 운영 내실화

- (자발적 행태개선) 지자체 행정행태 등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한 기업체감도 지도를 정교화*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 행태 개선 촉진

* 조사대상 기업 확대, 설문항목 검토 등을 통해 평가의 적합성 제고

- (적극행정면책) 지자체 공무원 대상 순회교육, 사례집 배포 등으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도모

- (사전감사컨설팅) 전체 시·도 도입 확산 및 활용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한 실질적 운영 독려

* 행자부 및 경기·제주·충남 등 11개 시도 도입, 전체 지자체 확산 추진